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8,520,000	8,055,600
일반회계	262,000,000	7,860,000
특별회계	6,520,000	195,600
기타특별회계	6,520,000	195,6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433,818	43,015
주택사업특별회계	29,200	876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16,390	15,492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62,088	4,863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1,811,625	54,3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93,964	35,81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000	210
드림빌특별회계	1,365,915	40,97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52,47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